

「구미시 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구미시 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함으로써 양성평등의 촉진과 여성능력개발,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사업을 지원하고 구미시 양성평등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에 이바지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기금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(안 제2조)
- 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기금의 운용·관리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-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-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: 「양성평등기본법」, 「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」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159조 및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에 따라 양성평등기금의 설치·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개별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42조제5항을 살펴보면,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양성평등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, 이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.
- 구미시는 「구미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」에 구미시 양성평등 기금 조문을 포함하여 설치하였고, 구미시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양성평등기금 조성 및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까지 모두 심의하고 있었음.
- 이에 대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별도의 개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, 기존의 기금과 관련된 조문에서는 기금의 용도에 ‘국제협력 관련 사업의 지원’이 삭제된 것과, ‘구미시 양성평등기금 운용심의위원회’를 신설하는 것 외에 특별한 변동은 없음.
- 집행기관에서는 기금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용·관리를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.